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0
----------	-------

제출년월일 : 2025.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진행 결과 기존 현금성 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제도 변경 요청한바, 이에 해당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나. 지원 내용 변경(안 제1조)(안 제4조)(안 제6조)

다. 환수 내용 변경(안 제8조)

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5. 1. 31. ~ 2. 20.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25. 2.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수축하금”을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관내에”를 “에”로 하고, “한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급금액)”을 “(지급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를 “생애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로”로 한다.

제5조 중 “지급대상자에게”를 “지급대상에게”로, “만”을 삭제하고,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관할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호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금의 전부를”을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9조 중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로, “장수축하금 지원현황”을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의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시기를 지급 신청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②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마포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②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마포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u> <u>지급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u> <u>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수축하금</u>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u>만 100세 이상인</u> 사람을 말한다. 2. “<u>장수축하금</u>”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u>장수축하금</u>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u>한정한다</u>. 제4조(<u>지급금액</u>) <u>장수축하금</u>은 예	제1조(목적) ----- 「<u>노인복지법</u>」 제4조에 따라 <u>장수축하물품</u> -----. 제2조(정의) -----. 1. ----- <u>100세</u> -----. 2. “<u>장수축하물품</u>”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u>장수축하물품</u>-----에-----한다. 제4조(<u>지급내용</u>) <u>장수축하물품</u>----

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 생애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로 -----.

제5조(신청안내) -----

- 지급대상에게 -----
----- 장수 축하물품 -----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관할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

제7조(지급 제외) -----

-----.

1. (현행과 같음)

2. ----- 장수축하물품-----

제8조(환수조치)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② 가족상황	본인과 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그에 상 당하는 금액을-----.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등 관리) -----

---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
-----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 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대 상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도 불구하고 전단의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시기를 지급 신청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② 가족상황	본인과 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강서현
연 락 처	02-3153-8857